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022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2002.06.2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로 결정(변경)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포동 654번지 일원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 04. 15. ~ 2024. 05. 17.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117)
- 개포4동 주민센터 (☎02-3423-7859)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I.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대	62,251.1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6.09% ⇒ (21,765억 - 6,249억) / 16,148억 X 100 = 96.09% - 총 수입 추정 : 21,765억 - 총 지출 추정 : 6,24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6,148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도호가 및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시세 하한값을 주택형별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 추정함.									
	구 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건물면적 (㎡)	대지지분 (㎡)	세대수	형별 평균가격 (백만원)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아 파 트	83.16	83.16	95.16	107.60	61.37	4	2,200	8,800	
		84.81	84.81	96.09	108.16	61.37	108	2,200	237,600	
		131.83	131.83	143.25	164.45	95.32	212	2,800	593,600	
		134.98	134.98	146.79	166.08	97.63	18	2,800	50,400	
		165.08	165.08	178.78	202.90	119.71	216	3,300	712,800	
	소 계		75,527.00	82,387.15	93,791.01	54,697.35	558	2,873	1,603,200	
	상 가	2층	341.38	-	400.31	249.55	9	-	4,551	층별 합계 면적
		1층	125.19	-	181.70	92.69	12	-	5,003	
		지층	134.80	-	166.41	99.81	10	-	1,999	
		소 계	601.37	-	748.42	442.05	31	-	11,553	
	종전자산 추정계(1)		76,128.37	-	94,539.43	55,139.40	589	-	1,614,753	
	종전자산 추정계(2)		현금청산비율 약 0% 가정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1) - (2)							1,614,753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			
	전용 84㎡형	21.2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96.09%)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132㎡형	28.8억								
	전용 165㎡형	34.5억								
상가 1층	6.0억									
※상가는 계약면적 33.058㎡를 기준으로 하였음										

※ 추정분담금 타당성 검증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2,251.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9,868.7	15.9	
	공 원	7,111.7	11.4	양재천변 존치공원
	녹 지	2,757.0	4.4	연결녹지
획 지	소 계	52,382.4	84.1	
	공동주택	52,382.4	84.1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251.1	-	62,25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111.7	-	7,111.7	11.4	
제3종일반주거지역	55,139.4	-	55,139.4	88.6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 654	-	증) 1,466.3	1,466.3	-	
신설	B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 654	-	증) 1,290.7	1,290.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증 1,466.3㎡)	• 연주로변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고, 양재천 변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연결녹지 신설
B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증 1,290.7㎡)	

2)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공원	근린공원	개포동 1267-2	-	증) 7,111.7	7,111.7	건고시296호 (83.09.07.)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토지지분 (㎡)			수직적 범위
신설	-	사회복지 시설	-	개포동 654	노인 복지시설	지상	1,250.0	807.6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강남구 (어르신 복지과)
						지하	750.0				
						계	2,000.0				

※ 사회복지시설 세부계획(수직적 범위, 규모, 출입구 등)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 준공시 기부채납

라.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해당없음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350.0	500 ~ 1,000세대 미만 330㎡ 이상
		어린이놀이터		1,055.3	-
		작은도서관		300.0	500 ~ 1,000세대 미만 158㎡ 이상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450.0	수변카페, 지역문화 및 공동체지원센터
		주민운동시설		402.5	-
		돌봄시설 (무상 임대)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650.0	-
			어린이집	400.0	500 ~ 1,000세대 미만 330㎡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130.0	66㎡ 이상
		소 계		3,737.8	805세대×2.5㎡×1.25=2,515.6㎡ 이상
		경비실		45.0	-
	관리사무소		360.0	10㎡+(805-50세대)×0.05㎡=47.8㎡ 이상	
	합 계		4,142.8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 설	개포 현대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251.1	획 지	52,382.4	개포동 654	14	-	-	14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개포현대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251.1	획지	52,382.4	개포동 654	공동주택	50 이하	250 이하	-	135m 이하 (40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805세대 ■ 전체건립규모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대수(조합원 이외)</th><th>비 율(%)</th></tr><tr><td colspan="2">계</td><td>805</td><td>100.0</td></tr><tr><td rowspan="2">85㎡ 이하</td><td>60㎡이하</td><td>-</td><td>-</td></tr><tr><td>60㎡ ~ 85㎡이하</td><td>359 (247)</td><td>44.6 (30.7)</td></tr><tr><td colspan="2">85㎡ 초과</td><td>446</td><td>55.4</td></tr></table>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예외적용 : 조합원 분양주택 : 전용면적 합이 종전 주택의 합보다 작거나 30% 이상 범위 : 조합원 이외 : 전용면적 85㎡ 이하									구 분		세대수(조합원 이외)	비 율(%)	계		805	100.0	85㎡ 이하	60㎡이하	-	-	60㎡ ~ 85㎡이하	359 (247)	44.6 (30.7)	85㎡ 초과		446	55.4
			구 분		세대수(조합원 이외)	비 율(%)																								
계		805	100.0																											
85㎡ 이하	60㎡이하	-	-																											
	60㎡ ~ 85㎡이하	359 (247)	44.6 (30.7)																											
85㎡ 초과		446	55.4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변 폭원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통경구간	• 폭원 20m 이상 : 남북방향(구룡초등학교변 ~ 양재천변)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 폭원 6m 이상 : 동서방향(쌈지형공지 ~ 언주로변) • 폭원 8m 이상 : 남북방향(구룡초등학교변 ~ 양재천변)																												
	쌈지형공지 (권장)	• 달터공원변 인접하여 쌈지형공지 조성																												
	개방형커뮤니티 (권장)	• 특화배치구간 내 양재천변(폭원 20m)																												
	담장설치 불허구간	• 양재천변 근린공원 및 연결녹지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언주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 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존치공원)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환산 부지	대지 지분		
	62,251.1㎡	52,382.4㎡	9,868.7㎡	214.9㎡	807.6㎡	7,111.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9,868.7\text{㎡} + 214.9\text{㎡} + 807.6\text{㎡} - 7,111.7\text{㎡} - 0\text{㎡} = 3,779.5\text{㎡}$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사유지면적) × 100 $= (3,779.5\text{㎡} \div (62,251.1\text{㎡} - 7,111.7\text{㎡})) \times 100 = 6.8\%$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20% = 230% - 인센티브 = 20% [공공보행통로(10%) + 열린단지(5%) + 돌봄시설(5%)]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적용 - 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_{\text{토지}} + 0.7 \times \alpha_{\text{건축물}})$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6.8%) - 허용용적률 : 230%, 대지면적 : 52,382.4㎡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기부채납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면적 : 3,564.6㎡ - 건축물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214.9㎡ $\Rightarrow 230\% \times (1 + 1.3 \times 1 \times 0.0691 + 0.7 \times 0.0041)$ $\therefore \text{상한용적률} = 251.32\% \text{ [250\% 이하]}$ $\alpha_{\text{토지}}$ $= \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757.0\text{㎡} + 807.6\text{㎡}) / (52,382.4\text{㎡} - 807.6\text{㎡})$ $= 0.0691$ $\alpha_{\text{건축물}}$ $= \text{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14.9\text{㎡} / (52,382.4\text{㎡} - 807.6\text{㎡})$ $= 0.0041$						

■ 공공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①	공시지가	18,480,000원/㎡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사유지 평균)
②	표준건축비	3,973,000원/㎡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등 책정가이드라인(노인복지센터) 참조
③	건축물 연면적	2,000.0㎡		노인복지센터
④	설치비용	7,946,000,000원		② X ③
⑤	부지가액	36,960,000원/㎡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건축물	환산부지	214.9㎡	1,022.5㎡	④ / ⑤
토지	토지지분	807.6㎡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현황) 558세대 계획) 805세대 증) 247세대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획지	52,382.4	84.1	공동주택용지

Ⅱ.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 654	-	증) 1,466.3	1,466.3	-	
신설	B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 654	-	증) 1,290.7	1,290.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연결녹지 신설 (증 1,466.3㎡)	• 언주로변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고, 양재천변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연결녹지 신설
B	녹지	• 연결녹지 신설 (증 1,290.7㎡)	

나)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공원	근린공원	개포동 654	-	증) 7,111.7	7,111.7	건고시296호 (83.09.07.)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문화시설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토지지분 (㎡)			수직적 범위
신설	-	사회복지 시설	-	개포동 654	노인 복지시설	지상	1,250.0	807.6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강남구 (어르신 복지과)
						지하	750.0				
						계	2,000.0				

※ 사회복지시설 세부계획(수직적 범위, 규모, 출입구 등)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 준공시 기부채납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24	강남구 개포4동	55,139.4	-	55,139.4	현대2차	공동개발 권장 (면적 : 61,879.1㎡)
	특별계획구역25		4,192.7	-	4,192.7	현대200동	
	특별계획구역26		2,547.0	-	2,547.0	현대220동	
변경	특별계획구역24	강남구 개포4동	55,139.4	증) 7,111.7	62,251.1	현대2차	공동개발 권장 (면적 : 6,739.7㎡)
	특별계획구역25		4,192.7	-	4,192.7	현대200동	
	특별계획구역26		2,547.0	-	2,547.0	현대220동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특별계획구역 24,25,26	특별계획구역 24 특별계획구역 25,26
특별계획구역 면적			• 61,879.1㎡	• 62,251.1㎡
획지(계획대지) 면적			• 57,646.1㎡	• 52,382.4㎡
공공시설 면적			• 4,233.0㎡	• 9,868.7㎡ ※ 양재천변 녹지(근린공원) 7,111.7㎡ 포함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비율 6.8%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비율 6.8% 내외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233㎡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3,539㎡) 계획 - 폭10m 도로(단지 남측변) (면적 : 694㎡) 계획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2,757.0㎡(순부담 5%)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2,757.0㎡)계획 • 세부개발계획 결정 시 순부담 1.8%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노인복지시설) 계획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640.4㎡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946.4㎡)계획 - 폭10m 도로(단지 남측변) (면적 : 694㎡) 계획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24.3% 내외 [*변경대안] • 기부채납(순부담)비율 6.8% 내외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기 준	• 210% 이하	• 210% 이하
		허 용	• 230% 이하	• 230% 이하
		상 한	• 250% 이하	• 250% 이하
배 치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고층 구간(평균층수 30층 이하) - 달터공원 및 양재천 특화 배치구간에 인접하여 고층 구간계획 (세부지침도 참조) - 블록전체 계획대지면적의 35%	• 최고층수 40층 이하
				• 최고층수 35층 이하
	건축한계선		-	
			• 획지변 : 폭 3m	[*변경대안] • 언주로변 : 폭 12m 이상 ※ 연결녹지 미조성에 따라, 건축한계선 지정 후 생태녹지조성구간을 계획 언주로변 녹지축 연결
	특화배치구간		• 양재천변 : 폭60m	• 양재천변 : 폭60m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기타에 관한 사항	보행동선		•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행동선 조성	-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3m 이상)	•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3m 이상)
	공공보행통로		-	• 동~서방향 : 6m 이상
	근린광장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남~북방향 : 8m 이상
	쌈지형공지		• 달터공원변 인접하여 쌈지형 공지 조성	-
			• 달터공원변 인접하여 쌈지형 공지 조성	-

※ 특별계획구역 25, 26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가능.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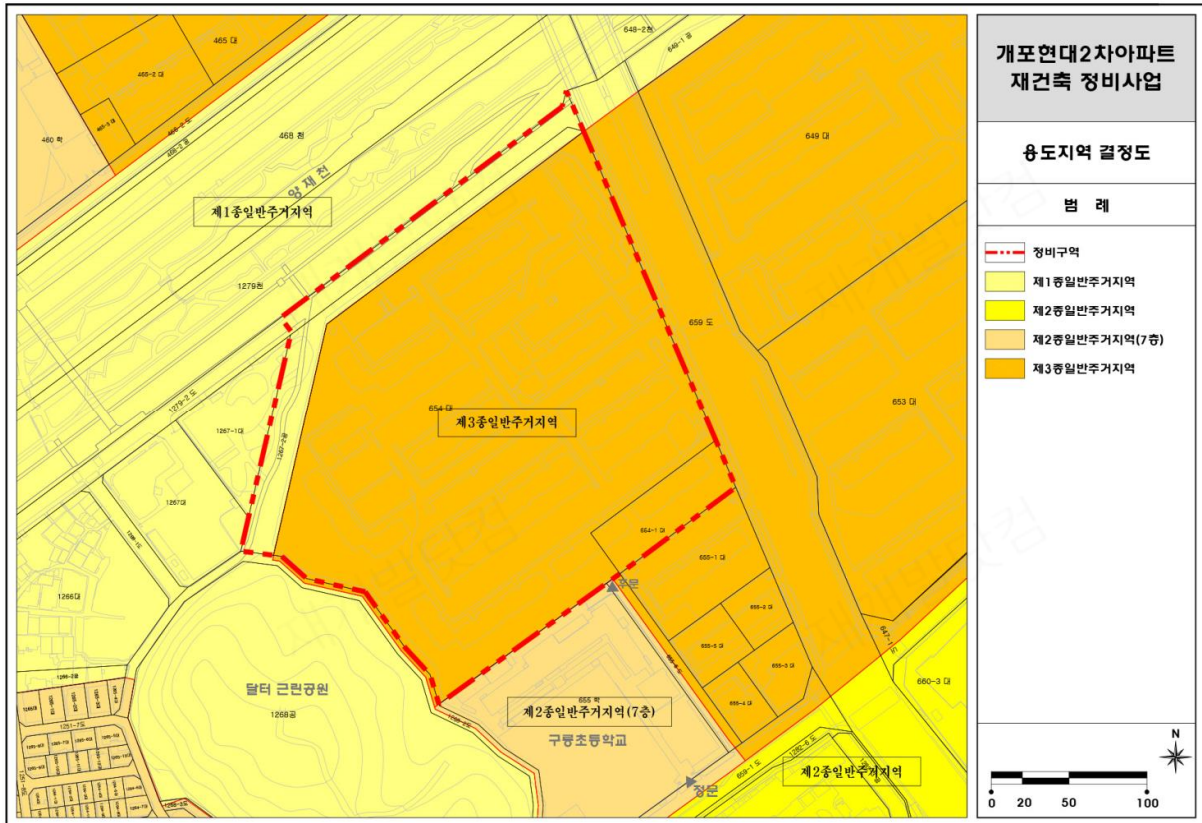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117)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gi.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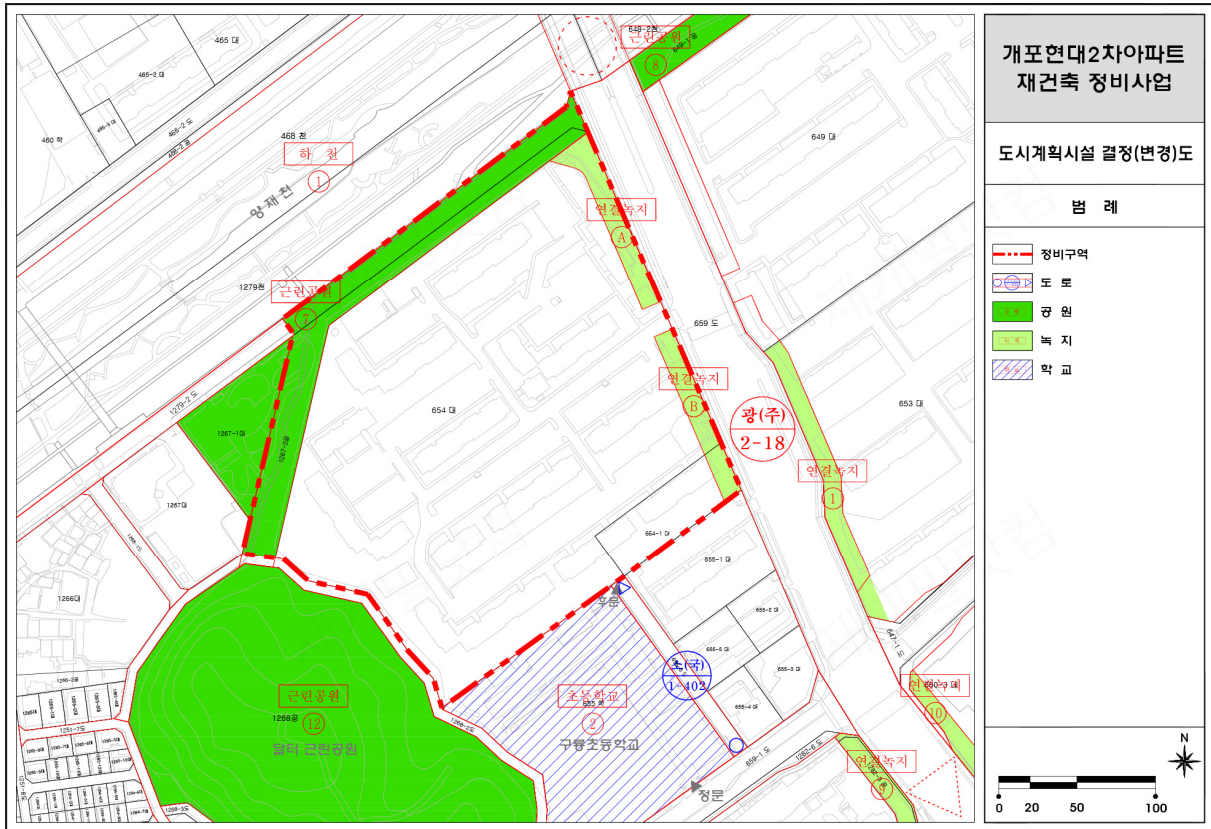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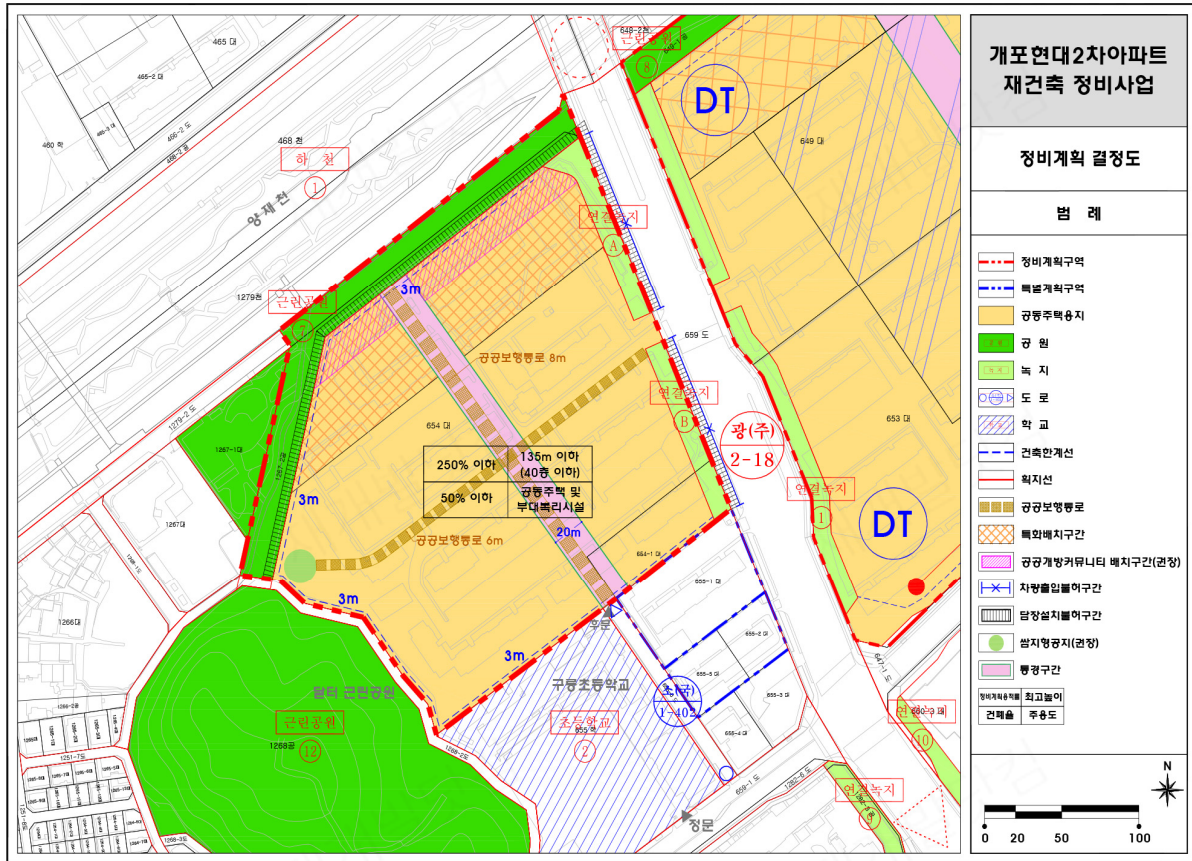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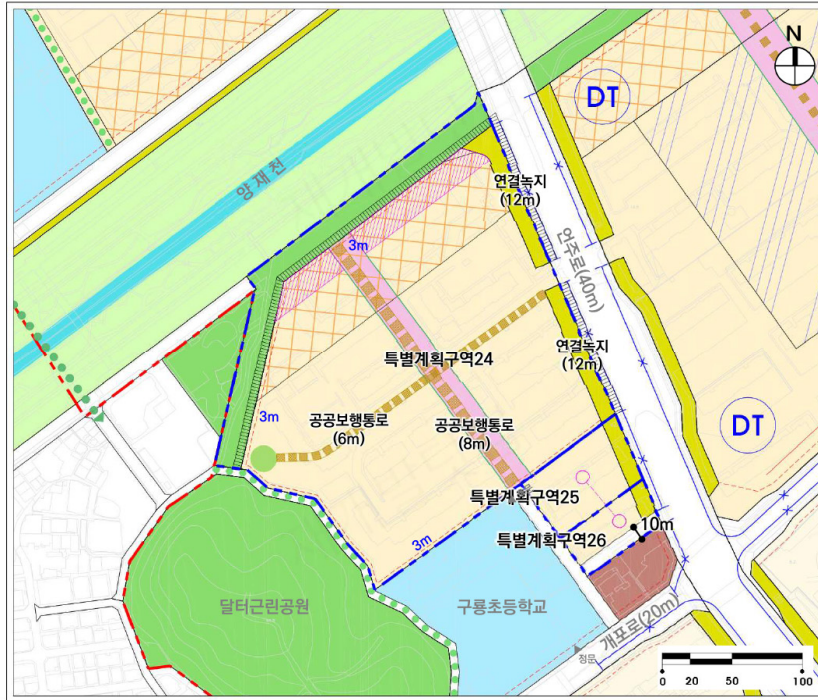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종합지침(기정)도



■ 지구단위계획종합지침(변경)도



특별계획구역25,26 변경대안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58㎡
- 폭 6m 도로(단지 남측변)

※ 특별계획구역 25,26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가능

공 람 의 견 서

□ 대상사업

안 건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사업위치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개포현대2차아파트

□ 의견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회신 받을 주소 기재)
소유물건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개포현대2차아파트 (제 동, 제 호) / (상가 제 호)
	전용면적

□ 제출의견

2024.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강 남 구 청 장 귀 하